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

제정 2022. 01. 12

제1조 (목적)

본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수수료)에 근거하여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등(이하 “관련 법규”라고 한다)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리)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자문”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과 처분, 취득과 처분의 방법, 수량, 가격 및 시기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2. “투자일임”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과 처분,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본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산에 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에 관계없이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4. “성과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의 종료일에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수수료의 부과기준)

-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체계)

- ① 투자자와 회사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지급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 요율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기본수수료만을 지급(이하 “기본형”이라 한다)

2.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이하 “혼합형”이라 한다)

- ② 혼합형의 경우 운용성과가 기준지표(BenchMark)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낼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③ 성과수수료는 투자일임계약에 적용하며 투자일임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지1>투자일임수수료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6조(기본수수료의 계산)

- ①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의 기본수수료는 기준금액에 기본수수료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요율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자와 회사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단 계약자산 금액이 정해진 경우의 투자자문 수수료율은 연간 계약금액의 (1%) 요율을 적용한다.
- ② 수수료 계산시의 기준금액을 계약금액 또는 순자산가액으로 할지는 투자자와 회사의 계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성과수수료의 계산)

투자일임계약 관련 성과수수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지1>투자일임수수료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8조(계약자산의 평가)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자문계약에 의한 자산의 평가는 법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을 준용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설명 의무)

회사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 규정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고지)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일임수수료(기본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시기, 금액 등의 투자일임 수수료의 부과에 관련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호(수수료의 부과절차)

회사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부과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회사가 고객과의 합의로 수수료 부과절차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기본수수료 : 회사는 수수료를 계약체결시점에서 미리 징수하는 방법(이하 “선취”라 한다)과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시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하 “후취”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선취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또는 계약서 지정일 이내 회사에 기본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성과수수료 : 회사는 계약만료일 또는 해지일에 운용성과가 투자자와 계약상의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성과수수료를 부과하며, 고객은 성과수수료 계산내역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또는 계약서 지정일 이내에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의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또는 계약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해지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선취금액 중 미경과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7영업일 또는 계약서 지정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정보의 공시)

- ① 회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의하여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단 최초 제정일 경우 시행일에 지체 없이 이행한다.
- ② 회사는 법 제58조제3항에 의거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최초 제정일 경우 시행일에 지체 없이 이행한다.

제13조(기준의 변경)

이 기준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

투자일임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1조 (일임수수료의 산정)

일임수수료 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투자일임 수수료율〉

기본수수료(연간)	성과수수료
1%	기준수익률(연 0%) 초과수익의 15%

1. 성과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중도해지시에는 기준수익률을 경과일수를 반영하여 일할 계산한다.
2. 성과보수는 가입 후 1년 단위로 징수하며,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 시 징수한다. 성과보수는 계약기간 종료일 또는 중도해지일 종가로 평가한 계좌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수익에 대한 초과수익의 발생분에 대해 산정된다. 성과보수 징수 시점에 이전 성과보수 징수내역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 대비 직전 성과보수 징수시점의 수익을 넘어서는 순 초과수익에 대해 적용하여 산정한다.
3. 명시된 수수료율과 계약서 상의 수수료율이 상이한 경우 계약서에 명기한 것을 준용한다.
4. 수수료에 대한 회사의 산정방법, 징수시기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2주일 전에 고객에게 통지한다.
5. 투자일임 수수료의 부과은 기본수수료는 선납, 성과수수료는 계약만기 또는 해지시에 부과한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

1. 수수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수수료 금액에 10,0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수수료 환불에도 적용)

제3조 (증액 또는 감액시 수수료)

1. 계약기간 중 증액계약시 추가 기본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추가수수료} = \text{추가증액분} \times \text{해당수수료율} \times (\text{잔존계약일수} / \text{계약일수})$
2. 계약기간 중 감액계약시는 일부해지에 준하여 계산한다.

제4조 (중도해지시 수수료)

1. 중도해지시 기본수수료는 계약유지일수(최초계약일로부터 해지효력발생일 까지의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2. 성과수수료는 해지시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제1조에 규정된 성과수수료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3. 성과형 계약의 경우 중도해지시 계약금액에 1%의 중도해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약유지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과 중도해지시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성과수수료를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수수료로 정산한다.

제5조 (기타사항)

본 기준에 없거나 본 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면합의에 의한다.